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법률 문제와 분쟁사례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법률 문제

1. 법률 문제의 국제화

이에 대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자체는 거의 해결책을 예상하지 않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한 국내의 사용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국가에서 복제, 배포, 개작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법률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음은 위에서 이미 제기한 바와 같다. 그런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법률문제가 다수 국가에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에 적용될 국제법적 해결은 없는 상태이다.

관련 당사국이 가입되어 있는 다자조약을 먼저 검토하고, 관련 당사국이 체결한 FTA 등양자 조약을 그 다음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자조약이나 양자조약을 검토하여도 다수 국가 간에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법률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특정 국가에 특정한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 국가의 법원에 그 사건의 관할이 있는 것인지, 그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무엇인지 하는 문제임은 이미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과 준거법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예컨대 대한민국 법원에 특정 소가 제기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소가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된 경우의 관할 법원과 준거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할 법원과 관련하여서는 관할과 관련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의 관할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법률문제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고,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면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할이 있는지를 판 단하게 될 것이다.

한편, 준거법과 관련하여서는 준거법과 관련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국제사법은 제24조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라는 표제하에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법률 문제의 다양성

가. 계약법 및 저작권법 문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국내법상으로는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는 그 종류에 따라 특수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위반한 것은 이용허락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특수한 조건을 위반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저작권을 수여한 이용허락 계약에 맞게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저작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라이선스 조건에 맞는 복제, 배포 및 개작을 할 의무가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 및 개작하는 경우, 위반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다.

첫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자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경우에, 라이선스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¹⁾되어 위반자는 더 이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 포, 개작할 수 없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지게 된다.

둘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자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위반자에 대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판매금지나 사용금지 등의 가처분을 하 거나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자는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등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셋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자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는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위반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등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나. 특허법 문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저작물에 특허권이 포함된 경우, 반대의 경우로서 특허 등록이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두 경우 모두 특허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특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자는 특허 침해 책임을 지게 되고,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자는 책임이면제된다고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되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¹⁾ 예컨대 GPL 제4조

[&]quot;본 라이선스에 의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및 서브라이선스 설정과 배포를 할 수 없다. 본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은 복제와 개작 및 서브라이선스 설정과 배포 등 의 행위는 전부 무효하며, 이 라이선스가 보장한 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한편,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준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특허권과 저작권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특허권자 또는 저작권자는 특허법 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하여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의 판매금지나 사용금지 등의 가처분을 하거나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자는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책임도 질 수 있다.

다. 상표법 문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마다 고유의 상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 스에 명시되어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고유의 상표를 등록한 경우, 상표를 무단으로 사 용한 경우에는, 위반자는 상표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 스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상표권자는 상표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판매금지나 사용금지 등의 가처분을 하거나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한 이용자는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책임도 질 수 있다.

라. 부정경쟁방지법 문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조건 중 대표적인 것이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source code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이고, 이 조건에 따라 source code를 공개한 경우에 영업비밀 유지의무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적이지만 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도8369 판결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국내 분쟁 사례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마. 공정거래법 문제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던 것처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약관에 해당한다는 논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결론이 일치하고 있고, 다만 약관규제법에 따라 형식적 유효성과 내용적 유효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대체로 무료라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독점규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서 저작권자의 보증 책임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소비자보호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바. 정보통신법 문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인터넷 상에서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에 이용자는 저작권 위반 책임을 지게 되고, 이러한 저작권 위반 행위가 인터 넷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용자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Online Service Provider)는 전기통신관련법 및 정보통신 관련 법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사. 통상법 문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배포되는 경우에 수출입 절차에서 저작권 침해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자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제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서 통관금지를 당하거나 압류를 당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주요 분쟁사례

1. 분쟁사례의 개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사례는 위반을 문제 삼는 주체가 SFLC 또는 gpl-violations.org 등 비영리 감시 기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반이 문제된 대상이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는 영리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서, 분쟁 해결 절차가 통상비밀리에 진행되고, 공개적인 소송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에 이르러도 비공개 합의에 의하여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은 처음부터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자 또는 감시 기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의혹을 자체 조사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공식 서면을 통하여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공식 서면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등으로 위반 행위를 정정한다면 분쟁이 소송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실한 답변 및 신속한 위반 행위 정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산업의 경영자 및 기술자에서부터 국가 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공통 인식이 있어야만 하며, 이를 위하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의 상시화 나아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거버넌스체계의 수립 및 운영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하여도, 외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자가 한국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실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위에서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단순한 저작권 관련 문제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법률문제를 선결하여야 할 경우가 많아, 소송을 제기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권리자 또는 감시 기구의 입장에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을 모두 법적 제재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이 아니며, 또한 쉬운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법적 제재를 하려고 할 것이고, 오픈소스 소프트웨

어 저작자 또는 감시 기구도 위반이 명백하고 법적 제재가 불가결한 경우에 그리고 법적 제재가 용이한 국가와 법원에서 이를 진행하려 할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사례가 미미해 보이는 것은 이와 같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권리자 또는 감시 기구가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선결해야 할 복합적인 법률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지, 국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 사례가 적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자 또는 감시 기구의 입장에서는 이미 권리 구제가 확인된 국가에서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기에 우선 이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며, 이것만으로도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될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 또는 이를 탑재한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으로서는, 국내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사례가 적다고 하여 전혀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자 또는 감시 기구가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외국에서 법적 제재를 진행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루빨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내의 개발자 수준이 최고에 이르고 community활동이 중심을 형성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eco-system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해결 책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분쟁사례와 관련하여 먼저, 국내 최초의 GPL 간접 관련 사건인 엘림넷 사건 및 그 밖의 국내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제소되었던 BusyBox 사건과 미국에서 최초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Jacobsen 사건 및 그 밖의 외국 분쟁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국내 분쟁사례

가. 엘림넷 사건2)

이 사건의 피고인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대표적인 GPL이 붙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작하였다. 응용프로그램을 개작한 경우에도 GPL에 따르면 개작한 응용프로 그램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있었던 회사는 위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영업비밀 보호의무를 부과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에서 위 소스코드를 사용하였 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1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서 소스코드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FSF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였다. 이후 2심이 진행되는 도중, 원고, 피고는 모두 GPL 준수를 약속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하였다.

2심 법원에서도 위 개작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GPL 조건에 따른 공개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소스코드가

²⁾ 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도8369 판결

일반공중에게 공개된 바 없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위반이 직접 문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FSF과 관여하여 소스코드가 결국 공개된 이상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게임파크홀딩스 사건 (2006)

국내 기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게임기를 수출하자, 원 저작권자가 GPL 준수를 요구하여 소스코드를 공개한 사건이다.

국내 기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위반한 경우에도, 라이선스 조건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 메타냅 사건 (2011)

외국 회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한국 내 배타적 독점적 사용권을 주장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한 사건이다. 법적으로는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 충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으나, 원고가 한국 내 배타적 독점적 사용권을 입증하지 못하여 싱 겁게 패소하였다.

3. 국외 분쟁사례

가. BusyBox 사건 (2009)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으로 제소된 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당 대기업들은 물론 유사한 제품과 시장을 가진 다른 대기업들까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분수령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다.

본 소송에서 법원에서 확정된 법률관계도 일부 있으나,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청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원고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사건 당사자

이 사건의 원고는 The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SFC)와 Erik Andersen으로 서, SFC는 다양한 FOSS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corporate home 및 재정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FOSS 프로젝트의 저작권 소유자 및 일부 회원 프로젝트들을 대신하여 저작권 침해소송을 집행하고 있다. 한편, Erik Andersen은 Busybox 컴퓨터 프로그램 저자이자, 개발자이며 Busybox 프로그램의 저작권 소유자이다.

이 사건의 피고로 Best Buy Co., Inc ("BestBuy"),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Samsung"), Westinghouse Digital Electronics. LLC ("Westinghouse"), JVC America Corporation ("JVC"),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 ("Western Digital"), Robert Bosch LLC ("Bosch"), Phoebe Micro, Inc ("Phoebe Micro"), Humax USA Inc., ("Humax"), Comtrend Corporation ("Comtrend"), Dobbs-Stanford Corporation ("Dobbs-Standford"), Versa Technology Inc. ("Versa Tech"), ZyXEL Communications Inc. ("ZyXEL"), Astak Inc. ("Astak"), GCI Technologies Corporation ("GCI")에 이르는 수많은 기업들이 제소되었다.

(3)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Busybox란 컴퓨터 내에 컴퓨터 사용 도구 세트를 구성하고, 이러한 도구들을 휴대폰, PDA, 작고 특별히 고안된 전자제품등과 같은 한정된 리소스와 함께 최적화시키는 단일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Busybox는 빠르고, 유동적이며, busybox 소프트웨어는 전세계에 걸쳐 많은 제조업자들에 의해 이용되어져 왔다.

원고 SFC는 수많은 FOSS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비과세 공공 자선단체이다. 또한, 원고는 단체의 회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들의 저작권 소유자들을 대신하여 저작권 침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Busybox는 원고 단체의 내부 프로젝트중 하나이며, Busybox와 관련하여 Mr, Andersen을 대신하여 저작권 침해소송을 진행한다.

Mr. Andersen은 1999년 11월 4일경 이후부터 Busybox를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Busybox를 소스코드 형태 및 인간이 읽기 가능한 형태로 GPL v2 라이선스에 따라 배포하고 있다.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서, Mr. Andersen은 다른 당사자들에게 특정 조건³⁾을 준수하는 한 Busybox를 복제, 개작 그리고 배포하도록 허용하였다.

따라서, 이용자가 Busybox를 재배포할 경우,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재배포할 수 있다.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Busybox를 라이선스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재배포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Busybox를 복제하고 개작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잃게 된다.4)

결국, 라이선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 피고들은 Busybox를 복제, 개작 혹은 재배포하는 모든 권리를 잃은 것이다. 이후 각 피고들이 Busybox를 복제, 개작 또는 재배

³⁾ b) You must cause any work that you distribute or publish, that in whole or in part contains or is derived from the Program or any part thereof, to be licensed as a whole at no charge to all third parties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4) 4.} You may not copy, modify, sublicense, or distribute the Program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under this License. Any attempt otherwise to copy, modify, sublicense or distribute the Program is void, and will automatically terminate your rights under this License. However, parties who have received copies, or rights, from you under this License will not have their licenses terminated so long as such parties remain in full compliance.

포하는 행위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행해진 것이다.

원고는 각 피고들에게 서면으로 이러한 위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하였으나, 각 원고들은 이를 무시하고 원고에게 진정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계속적으로 Busybox를 복제, 개작혹은 배포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Jacobsen vs. Katzer 사건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위반자는 저작권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정한 미국에서의 최초 판결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주로 미국에서 작성된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에서 저작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는데, 마침내 법원에서 저작권 책임은 인정함으로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2) 사실관계

원고인 Robert Jacobsen는, 캘리포니아 주의 버클리 대학의 물리학 교수였으며 모형 기차를 좋아하여 Java Model Railroad Interface (JMRI) 프로젝트를 이끌었는데, 그 프로 젝트는 모형 기차를 통제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개발한 모형 기차 애호가들과 컴 퓨터 프로그래머들의 모임이었다.

JMRI은 그들의 프로그램인 DecoderPro를 Artistic License 1.0 버전 하에서 그들의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DecoderPro 파일들의 헤더 파일에는, Artistic License의 전문(full text)이 포함되어 있는 "COPYING" 파일을 참조하라는 저작권 공지가 포함되었다.

Artistic License의 Section Three에는 '파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일이 다른 요구 조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설명하는 공지를 사용자가 눈에 띄게 삽입할 것'이라는 조건 하에 서 파일들을 복사하고 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Matthew Katzer는 Associates의 최고 책임자이다. Kamind Associates는 Decoder Commander라 불리는 모형 기차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였고, Katzer는 2005년 3월에 그의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특허를 취득했다. 그리고 Jacobsen에 편지를 보내어 DecoderPro의 배포를 중단할 것과 \$200,000의 금액을 요구했다. Katzer는 또한 Jacobsen의 고용주에게 편지를 보내서 모형기차 시스템과 관련한 이메일의 복사본을 요구했다.

Jacobsen은 2006년 3월에 Katzer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으며, 강제성도 없고, 특허 위반도 아니라는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JMRI는 DecoderPro와 Decoder Commander의 코드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파일 이름과 잘못 타이핑한 부분이 똑같았고, 이는 Katzer가 Artistic License를 따르지 않고 DecoderPro 파일의 일부를 복사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Decoder Commander 파일들은 저작자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았으며, "COPYING" 파일 안에 JMRI의 저작권 공지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또한 원소스의 위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JMRI의 원 source code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Jacobsen은 확인의 소를 변경하여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한 소를 병합시키고, Katzer가 Decoder Commander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적 사용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신청하였다.

Katzer는 나중에 DecoderPro를 복사하였음을 인정하였다⁵⁾.

(3)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의 판결⁶⁾

연방항소법원은 Katzer의 DecoderPro의 사용이 Artistic License의 사용 범위에서 벗어난 것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만약 Artistic License의 조항들이 합의사항(covenants)이면서 동시에 조건 (conditions)이라면, 이러한 조항들은 라이선스 범위의 한계를 지우는 것임과 동시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그러나 만약 라이선스 조항들이 단순히 합의사항이라면 계약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반면에 조건(conditions)은 저작권의 범위(scope)를 이루는 것으로 조건을 위반한다는 것을 저작권 침해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7)

라이선스 조항이 합의사항인지 조건인지 해석하기 위하여, 연방항소법원은 라이선스 그 자체의 문구를 살펴보았다. 라이선스의 서문(preamble)에는 명시적으로 "이 문서의 목적은 이 팩키지가 복사되었을 때의 조건(the conditions)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연방항소법원은 또한 라이선스의 Section Three를 살펴보았다. Section Three에는 사용자가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provided that)"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provided that"의 통상적인 용법이 조건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던 사실에 주목했다. 라이선스의 서문과 Section Three를 근거로 하여 법원은라이선스의 조항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이루는 조건이라고 판결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방항소법원은 Artistic License의 조항들이 강제성이 있는 저작권 조건이라고 판시하였고, 그러한 조건을 따르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배포하거나 수정하거나복사하는 것은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반하여 지방 법원은 조건을 따르지 않고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배포한 Katzer의 행동에서 Jacobsen의 승소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연방항소법원은 Jacobsen이 가처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 파기환송하였다.

연방 항소법원은 또한 라이선스 조항이 비경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 절하되는 것에 반대했다. 원본 파일을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기재하는 것은, 장래에 그 파일

⁵⁾ Amanda Albrecht Earl, "Copyright Infringement And Open Source Public Licenses: JACOBSEN V. KATZER, 535 F.3D 1373 (FED. CIR. 2008)", University of Cincinnati Law ReviewSummer 2009

⁶⁾ Jacobsen v. Katzer, 535 F.3d 1373, 87 U.S.P.Q.2d 1836 (Fed Cir. Aug. 13, 2008).

⁷⁾ 합의사항(covenant)이란 "계약에서의 약속(promise)이나 정식 동의(formal agreement)이다." 합의 사항을 위반한다는 것은 계약에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소를 제기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반면에 조건(conditions)은 저작권의 범위(scope)를 이루는 것으로 조건 을 위반한다는 것을 저작권 침해를 의미한다.

을 사용할 사용자들에게 프로젝트에 협력하게 함으로써, 프로젝트를 광고하는 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이라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또한 저작자가 저작물의 사용, 배포, 수정을 통제하기 위한 조건도 중요한 것임을 법원은 판시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요구가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 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Welte v. D-Link 사건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위반자는 저작권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정한 독일에서의 판결이다.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계 하에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 시, 위반자는 저 작권법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2) 사실관계

피고(D-link Copr.)는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를 개인 및 기업 고객에 판매하고 있는 대만 제조업체의 자회사이다.

2006년 1월, 피고는 데이터 저장장치인 "Wireless G Network Media Storage DSM G600"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저장장치에는 GPL 프로그램인 msdosfs[8], initrd[9], mtd[10]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배포에 있어서 GPL 라이선스도 첨부하지 않았고,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으며, source code도 공개하지 않아 GPL 라이선스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에 원고(gpl-violations.org)는 피고가 GPL 라이선스 조건을 침해했다는 신고에 따라 소송을 하기 위해 관련 저작권자들에게 저작권을 이전 받았다. 2004년 12월 12일에는 오스트리아인인 Werner Almesberger에게서 'msdosfs'에 대한 권리들을, 2004년 9월 28일에는 'initrd'에 대한 권리들을 양도 받았다. 2004년 11월 11일에 영국인인 David Woodhouse에게서 'mtd'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의 제품에 GPL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41.34 유로에 GSM G600을 구매하고 역분석을 통하여 펌웨어를 조사하였다.

2006년 2월 1일. 원고는 변호사를 통하여 우편으로 피고가 DSM G600의 펌웨어에서 'mtd', 'initrd', 'msdosf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나 GPL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그와 같은 상응하는 법적 의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침해 금지 및 중지(cease-and-desist)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피고의 ftp 서버로부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나아가 구매자에게 장치의 배포가 GPL 위반임을 알리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원고에 의해 배포된 제품이 msdosfs, initrd, mtd 프로그램을 담은 펌웨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역분석에 4시간이 걸렸으며 이 일을 하는데 시간당 140 유로, 즉총액으로는 649.60 유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의 GPL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법원에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o 피고는 원고에게 3,188.44 EUR를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또한 2006년 2월 25일 이후 5%의 이자 141.34 EUR에 대해서는, 원고 소유 제품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o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의 얼마나 많은 품목을 피고가 획득하였는지, 피고가 판매한 제품의 품목 수, 장치의 상업적 구매자의 신원정보 및 원고가 누구로부터 제품을 획득하였는지를 공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위 사례에 대해 독일 법원8)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GPL규정에 따르지 않고 mtd, initrd, msdosfs 프로그램이 포함된 펌웨어를 탑재한 데이터 저장장치를 배포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며, 독일 저작권법 제97조에 따라 침해금지 및 중지(cease-and-desist) 청구는 타당하다.

관련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msdosfs 프로그램은 저작자권가 Almesberger씨이다. 그는 프로그램의 소소코드에 이름이 나와 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로 추정(독일 저작권법 제10조)된다. mtd 프로그램과 관련 하여 출력물로 제출된 소스코드에 Woodhouse씨가 저작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mtd 프로그램은 Woodhouse씨가 저작권자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에 대해 피고는 처음부터 제출된 출력물이 소스코드의 원본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msdosfs, mtd, initrd 프로그램은 저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충분히 개인적이고 지적인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또한 이 프로그램들은 복잡하다. 이러 한 측면에서 볼 때, 이 3 개의 프로그램은 저작권보호의 가치가 있는 충분한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상의 추정이 가능하다.

Woodhouse씨와 Almesberger씨는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의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독일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2호)

DSM G600의 펌웨어는 msdosfs, initrd, mtd를 포함하고 있다. 피고는 처음부터 자신은 DSM G600의 판매자이기 때문에 내장된 프로그램의 원(源)소스코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중 msdosfs, initrd, mtd의 소스코드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드의 문자열을 세부적으로 나열하면서 피고에 의해 사용된 소스코드와 Almesberger씨와 Woodhouse시가 프로그래밍한 원(源)소스코드를 비교하여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론하지 않고 원고가 코드가 동일할 수

⁸⁾ The District Court of Frankfurt/Main (Landgericht Frankfurt/Main)

있다는 것이지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만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는 반대로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입증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소스코드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드의 문자열이 있다는 사실은 사실상 그와 같은 소스코드가 사용되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결국 피고는 자신이 위 프로그램들을 사용한 펌웨어를 탑재한 DSM G600의 판매자이기 때문에 그의 모회사로부터 이와관련된 어떠한 정보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GPL은 저작권자와 피고와의 법률적인 관계이다. 3 개의 프로그램은 GPL하에 라이선스가 주어졌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경우 GPL로 프로그램을 배포한 저작권자는 결정권이 있거나 한정된 그룹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제안 행위는 저작권법 하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거쳐 그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에 의해 승인되어지는 것으로이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저작권자는 사용자들로부터 사실상의 승인허락 없이 이러한 법적인 관계에 놓인다는 추측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151조)

만약 GPL이 원고와의 법률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부족했다면, 피고는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복제, 배포, 수정할 어떠한 권한도 없게 된다. 특히, GPL의 조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법적 조건의 포기를 포함한다고 해석되어질 수 없다. 정확하게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비배타적인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방식을 취하면서 프로그램을 사용,수정, 배포할 수 있는 자유는 GPL의 침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GPL은 규정하고 있다.

GPL에 의해 부여된 라이선스의 조건들은 쉽게 인터넷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자들과 피고 사이에는 계약관계로 형성된다.

GPL 제4조에 따라 만약 사용자가 GPL 제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면, GPL상 권리들은 중단되고 저작자에게 다시 귀속된다. 특히 이러한 준수사항들에는 사용자가 프로그램복사본 각각에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GPL을 언급하여야 하며,라이선스를 프로그램에 추가하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사용자를 심각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그 때문에 독일 민법 제30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GPL 제2조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피고는 라이선스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피고에 의해 이미 판매된 제품과 관련하여 제품의 판매는 GPL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은 저작권의 동의한 판매방식으로 유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배포권의 소진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매자는 GPL을 인식함으로써 저작자로부터 직접 사용에 필요한 권리를 언제든지 획득할 수 있다.

원고는 테스트 목적으로 구입한 데이터 메모리 장비의 역분석 비용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역분석은 DSM G600에 사용된 펌웨어에 3개의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원고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였기 때문에 배상비용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비용으로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는 비용이다. 또한 역분석에 있어서도 독일 저작권법 제69e조의 조건에 따라서 유일하게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역컴파일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즉, 원고는 목적코드를 소스코드로 변환하지 않았고, 단지 제품의 부팅절차를 기록하고 세 가지 프로그램들 중하나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위한 결과를 시험했을 뿐이다. 그리고 원고는 프리랜서 프로그

래머로서 역컴파일이 직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역분석에 투자한 시간에 대해 통상적인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

라. Welte v. Skype 사건

GPL 위반을 감시하는 www.gpl-violations.org가 리눅스 커널의 GPL 라이선스 위반을 이유로 Skype사를 상대로 독일지방법원에 제소한 사건이다. Skype 사는 스페인 제조업체인 SMC Networks에서 리눅스 기반으로 만든 SMC WSKP 100 VoIP 전화를 유통하는 세계 최대 인터넷 전화 업체이다.

법원은 송수화기의 제조업체는 SMC Networks 사지만 Skype 사가 이 제품을 실제적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했으므로 라이선스 요건 충족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며, GPL 기반 제품은 유통할 때, 사용자들이 source code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해당 제품이 GPL 기반 제품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Skype사는 모두지키지 않았으므로 Skype사가 GPL 라이선스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GPL 위반과 관련하여 GPL 하의 소스코드를 사용해 개발한 실제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GPL 기반 제품을 유통한 유통 업체에 source code를 공개할 것과 GPL 기반 제품임을 명시할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마. Bracken 사건

(1) 사건 내용

Bracken社의 제품은 주로 OEM 벤더들에게 판매되며, 응용장치에 설치되어 인터넷 브라우징 역할을 하는 장치같이 단일한 용도로 쓰이는데, 거의 100%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 이며, 대부분 GPL이나 관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따라 생산된 것이었다.

FSF는 Slashdot(뉴스제공 및 토론 사이트) comment에 기재된 리포트를 통해 위반내용을 인지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위반내용을 발견한 자유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2) 합의 및 협상 내용

- o Bracken社의 대리인은 EULA를 GPL에 맞게 재작성할 것이며, 새로운 EULA의 이용 전 FSF를 통한 심사를 거친다.
- o Bracken社의 엔지니어들은 GNU/Linux 배포판에 관한 소스를 제공한다.
- o Bracken社의 대리인은 소스공개와 관련한 이러한 사태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GPL의 준수를 위한 내부세미나를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 o Bracken社는 FSF가 공식적으로 당사의 배포권을 회복시킨 이후에만 상품의 배포를 재개한다.

마. Davrik 사건

(1). 사건 내용

FSF는 Davrik社의 SDK가 GNU Compiler Collection(FS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C, C++ 및 기타 언어를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툴의 집합)에 기초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보고를 받고, GNU GCC와 명백하게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한 후, 위반 내용을 확인하였다.

FSF의 Compliance Engineer는 보고자들이 표준테스트를 통해 위반내용을 확인했는지의 여부와 Davrik社의 SDK가 사실상 GCC로부터 파생된 제품으로 확인되었는지를 문의했다.

Davrik社는 Windows와 연계하여 많은 기능을 추가했는데, 이 기능들에는 특정 소비자 장치의 칩셋을 지원하는 기능이나 그러한 특정장치에 대한 연결과정(the linking process: LP)을 보조하는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FSF는 GPL이 소비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해 설명한 바 있는데, 그러한 권리란 예를 들자면 Davrik社는 Binary가 포함된 소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들 또한 그러한 소스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Davrik社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FSF는 이러한 문제를 Davrik社 측에 제기했으며, Davrik社는 이 문제를 그들의 법률대리인에게 전달했다.

(2) 합의 및 협상 내용

- o Davrik社의 SDK와 LP가 사실상 GCC의 2차적 저작물임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소스를 공개할 것
- o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다 나은 빌드 명령어 제공 및 이러한 설정 명령어가 이후의 소 프트웨어 배포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 o Davrik社의 제품을 구매한 이전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웹사이트나 뉴스레터를 통해 현재 관련 소스들이 이용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지할 것

바. Vigorien 사건

(1) 사건 내용

Vigorien社는 유닉스와 같은 컴퓨터 파일시스템의 암호화 백업 솔루션 상품을 배포하는 회사이다. 이 백업 솔루션은 표준 유닉스 유틸리티인 "tar"를 대체한 백업 유틸리티인 GNU tar에 기초한 상품으로서, 몇몇 추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Vigorien社의 백업 솔루션은 암호화 기능을 GNU tar에 추가했으며, 백업을 편리하도록

하기위한 유틸리티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었다.

FSF는 이용자 리포트를 통해 위반내용을 인지하였으며, 추가된 암호화 기능은 단순히 GNU tar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제품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결정하였다.

(2) 합의 및 협상 내용

암호화 기능이 추가된 수정내용과 함께 GNU tar 의 source code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함 으로써, GPL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 Cisco 사건 (2008)

(1) 사건 내용

2008년 12월 11일 FSF는 Cisco社를 상대로 GNU C Library, GNU Coreutils, GNU Readline, GNU Parted, GNU Wget, GNU Compiler Collection, GNU Binutils, and GNU Debugger 등 관련 GPL 2.0 및 LGPL 2.0을 위반하였다.

문제된 제품은 Broadcom社가 Linksys社에 제공한 것이었으며, Linksys社를 Cisco社가 인수하였기 때문에 현재 라이선스를 위반하고 있는 Cisco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FSF는 Cisco社가 GPL 2.0 및 LGPL 2.0에서 요구하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했기 때문에 Cisco社에 대하여 하였다

(2) 합의 및 협상 과정

2009년 5월 20일 Cisco社 가 Linksys社 제품이 자유 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 준수하는 것을 합의하고, 또한 FSF 측에 비공개적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양사가 합의를 보았다.

아. Xiaomi 사례 (2014)

Xiaomi Mi3는 2013년 9월에 출시되었고, 후속 모델인 Mi4는 2014년 7월에 출시되었다.

특히나 Mi3의 경우 GPLv2 라이선스 조항에 의거하여 source code를 공개해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많은 팬들과 개발자들에게 비판당하였었다. Xiaomi는 즉시 기기에 대한 커널 source code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반복적으로 공개 일정을 지연시켰고 지연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었다.

2014년 12월 발표에서 Xiaomi VP 휴고 바라는 Mi3의 커널 코드를 Q1이내로 공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Q1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 드디어 약속을 이행하였다. Mi3 (world,

CDMA), Mi4, 그리고 Mi Note의 커널 소스 코드는 Xiaomi의 GitHub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무나 열람 가능하며 이번 공개는 향후 커스템 ROM 에코시스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1월에 출시된 하이엔드 Xi Note phablet도 공개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Xiaomi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GPL에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이번에 공개를 결정한 것인지 두고 봐야할 것이다.

자. VMware 사례 (2015) - 진행중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원고측과 피고측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진행 절차나 문서가 공개될 수 없으므로, 현재 상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Christoph Hellwig는 리눅스 커널 개발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 중 한명이다.

2011년 10월에 SFC는 VMware ESXi 제품에 대한 GPL 위반 보고를 받았다. GPLv2라이선스를 가진 리눅스 코드의 일부와 VMware의 자체개발 코드("vmkernel")를 조합하여만든 결합 저작물과 관련이 있다. 이런 형태의 GPL 관련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GPL과 연관된 결합/파생 저작물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단 하나의케이스로 모든 결합물에 대한 결론은 내릴 수 없다.

이에 대해 SFC는 VMware와 평화적으로 소통하였다. VMware는 즉시 SFC를 미국에 있는 외부 법률 고문에게 연계하였고, 2011년말부터 2013년까지 SFC는 그와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 간 VMware는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향해 실질적이고 꾸준한 진척이 있었다.

그러나 몇 개의 작은 문제들과 하나의 큰 문제가 미해결로 남아 있었는데, 해당 소송은 SFC와 Christoph Hellwig가 Till Jaeagar 변호사를 통하여 VMware를 수년간 설득한 후에 진전 없자 이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SFC는 독일에서 해당 건에 관한 법적 조치를 추구할 목적으로 Christoph Hellwig와의 보조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4. 분쟁사례를 통한 시사점

위와 같은 일련의 분쟁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련된 분쟁은 일단 시작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아닌 일반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분쟁과 동일하게, 저작권 침해 여부의 법률 판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큰 차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아닌 일반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source code가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라이선스 계약에서 처음부터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라이선스 계약 위반인 행위가 사전에 명확하여 이러한 위반 행위가 있으면 바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음에 대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source code가 공개 되어 있고 또한 라이선스 계약에서 처음부터 자유로운 이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일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이용이 먼저 발생하고 라이선스 위반 여부는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사후에 판단되며 위반으로 판단되는 행위만 저작권 침해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아닌 일반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계약이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하

여 위반 행위의 유형이 정형화됨에 대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해당 라이선스 계약이 (이론적으로는 2,000여가 넘는) 다양하고 상이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어서 위반 행위가 쉽게 정형화될 수 없다는 점이 이러한 차이를 더욱 크게 만든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 여부의 판단이 항상 사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용이 잠재적으로는 라이선스 위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용되는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전수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추가한다.

따라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아닌 일반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형화된 라이선스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감시하는 일반 라이선스 관리, 즉 license compliance로 족함에 대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첫 단계부터최종 제품이 개발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해당 라이선스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수시로 점검해야하는 종합 라이선스 관리, 즉 license governance가 필요하게 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가진 장점을 기초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활용에만 치중하면, 위분쟁 사례에서 보듯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라이선스 위반을 이유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여 전혀 계산하지 못했던 영업외 손실을 입게 된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다음에서 상세히 보듯이 결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대비하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